

##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현황과 시사점

오윤아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yaoh@kiep.go.kr, Tel: 3460-1201)

## 차 례 ●●●

1. 머리말
2. 기존 제재의 주요 내용
3. 제재 완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주요 내용 ●●●

- ▶ 2012년 미국은 다섯 번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일 반특혜관세(GSP) 배제, 무기수출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완화하였음.
  - 2012년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직전에 금수조치 완화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얀마의 교역과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제재 완화는 법률개정 없이 행정부 조치인 적용유예(waive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재 도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변이 없는 한 기존의 포괄적 제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 현재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기존의 포괄적 제재에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중심의 선별적 제재로 전환되고 있음.
  - 제재 완화에 따라 미얀마와 관련된 금융거래, 투자, 교역이 미국기업들에 허용되었으나,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음.
- ▶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얀마 협력 파트너 선정에 주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제3국 기업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평판이 실추되는 등 간접적인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 한국정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달러 송금 재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지원이 필요함.

## 1. 머리말

-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를 주도해왔는데, 이러한 제재는 미얀마의 대외경제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미얀마 개혁개방 이후 대외환경 변화 역시 미국이 미얀마의 자유화에 대응하여 경제제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제하는가가 관건이었음.
- 2012년 다섯 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완화에 따라 미얀마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이 보다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에서 미국 제재 완화의 범위와 수준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제재를 살펴보고, 2012년에 이루어진 제재 완화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 2. 기존 제재의 주요 내용

- 미국의 미얀마 제재 완화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17개 이상의 법령이 중첩되어 경제제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에는 미얀마를 제재 대상으로 적시한 6개 법률과 5개 대통령령이 있으며, 미얀마가 해당 법률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소년병, 인신매매, 노동권 억압,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의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별개의 6개 법이 있음(표 1 참고).
  - 후자의 경우 근거법이 정하는 제재 대상에 미얀마가 해당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제재가 결정됨.
- 5개 대통령령의 경우 미국 헌법과 미얀마를 적시한 6개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97), 국가비상법(The National Emergency Act)에 근거를 둬.

표 1.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기본 구조

분류	법적 근거	제재 이유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	미얀마를 직접적 대상으로 적시한 6개 법률과 5개 대통령령	미얀마 내 정치범, 인권과 민주주의, 마약 재배와 유통 문제
기존 제재 대상에 미얀마가 해당	다음의 이슈로 인해 미얀마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 6개의 법률	소년병, 인신매매, 자금세탁, 종교의 자유 보호 결여, 노동권 억압, 미국 안보 위협

자료: 미국 입법조사처(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U.S. Sanctions on Burma. (October 19) R41336.)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복수의 법령이 동일한 분야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제재가 중첩되며, 또 각 법령마다 제재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표 1 및 표 2 참고).
- o 예를 들어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 금지는 외국인조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었고, 버마자유민주주의법은 미얀마산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제이드법(Jade Act)의 경우 경옥과 루비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규정하였음.
- 위 법령들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는 시행규칙인 미얀마 제재에 관한 연방규정집(31 CFR 537-Burmese Sanctions Regulations)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였음.

표 2. 미얀마 경제제재에 직접 관련된 법령과 제재 분야

구분	법령(제정 연도)	제재 분야							
		투자 금지	금융거래 금지	원조 금지	수입 금지	GSP 적용금지	자산 동결	비자 금지	무기수출 금지
연방 법률	관세무역법 138조(1990)				○				
	외국원조법 307조(1961, 개정 1994)			○					
	수출금융관련법 570조(1997)	○		○				○	
	버마자유민주주의법(2003)			○	○		○	○	
	제이드법 (2008)		○		○		○	○	
	P.L. 112-92(2012)			○					
대통령령	E.O. 13047(1997)	○	○	○					
	E.O. 13310(2003)		○		○		○		
	E.O. 13448(2007)						○		
	E.O. 13464(2008)						○		
	E.O. 13619(2012)		○				○	○	

주: 미얀마가 제재대상으로 적시된 법령만 포함. E.O.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나머지는 연방법률.  
 자료: 미국 입법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3. 미얀마 경제제재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과 제재 분야

법령(제정 연도)	제재 분야							
	투자 금지	금융거래 금지	원조 금지	수입 금지	GSP 적용금지	자산 동결	비자 금지	무기수출 금지
소년병방지법(2008; P.L. 110-457)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2000; P.L. 106-386)			○					
애국법(P.L. 107-56)		○						
국제종교자유법(P.L. 105-292)								○
무역개혁법(1974)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1989)					○			
무기수출통제법(1976)에 근거한 대통령 지정(1993)								○

자료: 미국 입법조사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3. 제재 완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 가. 제재 완화 배경

##### 1) 미얀마의 국내개혁

-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정치범 석방, 언론의 자유 허용, 아웅산 수찌의 국회의원 당선 등 정치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
- 미국은 제재의 해제를 위한 주요 선결조건으로 (1) 모든 정치범의 석방, (2)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민주주의 이행을 요구해왔음.
- 2012년 9월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미얀마 제재를 지지하던 수찌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제재 해제 명분에 큰 힘을 실어주었음.
- 지난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현재까지 진행된 미얀마 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해석됨.
- 현재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해 미국은 양자관계 개선과 경제적·정치적 제재 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적 개입 (pragmatic engagement)'을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 있으며 1) 제재완화를 통해 미얀마 개혁을 지지하고, 2) 기존의 포괄적 제재(blanket sanctions)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s)로 전환하고 있음.

##### 2)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 2011년 미국은 아시아 복귀(pivoting back to Asia)를 선언하였으며, 9·11 사태 이후 중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국 안보의 중심을 이제 아시아로 돌려 중국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자 함.
- 아시아 복귀 이전까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해 안보적 이해관계를 크게 갖지 않았고, 경제적 관계도 긴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 우선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급증함에 따라 정책전환이 필요하게 됨.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미국이 2013년 방콕 근해에서 시행할 예정인 군사훈련에 미얀마 군을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한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함.
-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대내외 이미지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3) 제재 효과의 불확실성

- 미국의 미얀마 제재가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엄밀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초기 조건을 볼 때 성공하기 어려운 제재였다고 할 수 있으며,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고 있음.

- 1)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정권교체라는 정책변화가 그 목적이었고, 2) 대상국인 미얀마가 독재국이었으며, 3) 1989년부터 최근까지 제재가 다방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미얀마 군사정부가 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고, 4)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제재방해국(black knight, sanctions buster)이 있었음.<sup>1)</sup>
- 미국과 서방 세계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와 고립 정책이 미얀마 개혁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얀마에 대해 개입(engagement) 정책을 추구했던 ASEAN은 제재가 아닌 개입이 미얀마 개혁정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미얀마 제재 효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현 국면에서 미국은 제재 완화를 통해 미얀마가 개혁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나. 제재 완화 과정

- 2012년 11월 19일 기준 미국은 2011년 미얀마 민간정부 출범 이후 크게 다섯 번에 걸쳐 제재를 완화하였는데, 이는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선거 등 정치적 일정 전후에 이루어졌음(표 4 참고).

표 4. 미국의 미얀마 제재 완화 일지

정치적 일정	미얀마 제재 관련 미국정부 발표
2011년 12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 방문	(2012년 2월) 미얀마에 대한 원조제재 완화 발표
2012년 4월 미얀마 보궐선거	금융거래 제재와 투자제재 완화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
2012년 5월 미얀마 국무장관이 미국 방문	금융거래 제재와 투자제재 완화 발표
2012년 7월	금융거래 제재와 투자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 발표
2012년 9월 아웅산 수치와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미국 방문	수입금지 완화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	수입금지 완화 발표(구체적 조치도 함께 발표)

자료: 언론 보도와 미국 정부문서를 참고로 필자 정리.

- 미얀마에 대한 제재완화는 투자금지 완화, 금융거래 금지 완화, 미얀마에 대한 원조금지 완화,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완화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2012년 11월 19일 기준으로 GSP 배제, 무기수출 금지 이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 완화 조치가 발표되었음(표 5 참고).

1) 경제제재 성공에 대한 일반적 조건에 대해서는 Hufbauer, Gary, Jeffrey Schott, Kimberly Elliott and Barbara Oegg(2007),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참고

표 5. 분야별 경제제재 완화 여부 및 현황

분야	내용	관련 법령		시작 연도	완화 여부(2012년 11월 19일 현재)
		법률	대통령령		
금융거래 금지	미국으로부터의 또는 미국시민에 의한 모든 금융거래 금지	제이드법	대통령령 13047 외 2개	1997	2012년 7월 완화*
투자 금지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1997년 정부종합 조달법	대통령령 13047	1997	2012년 7월 완화
비자 금지	미얀마 정부와 군부인사, 미얀마 군사 정권 주요 지지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제이드법 외 2개	대통령포고 6925외 1개	1996	2012년 9월 부분완화*
자산동결	미얀마 정부와 정부인사의 자산동결	제이드법 외 1개	대통령령 13310 외 3개	1997	2012년 9월 부분완화*
원조 금지	양자원조 및 국제기구를 통한 미얀마 원조 금지	대외원조법 외 6개	-	1995	2012년 10월 완화
미얀마산 제품 수입금지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2003년부터 모든 제품으로 확대)	버마자유 민주주의법 외 1개	대통령령 13310	1990	2012년 11월 완화
일반특혜관세 적용 금지	1974년 무역개혁법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를 통해 일반특혜관세 적용 중단	-	대통령포고 5955	1989	지속
무기수출 금지	미얀마에 대한 모든 군수물자와 서비스 수출 금지	무기수출 통제법	-	1993	지속

주: \* 패딩세인 대통령 등 고위인사 일부에 대한 제재는 개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대통령령 13619호를 통해 그 적용범위는 보다 넓어진 측면도 있음.

자료: 미국 입법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완화여부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시행 기준.

## 다. 주요 제재 완화 내용

■ (투자 분야) 미국정부는 2012년 5월 17일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지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어 7월 11일 재무부가 미국기업의 미얀마 신규 투자를 허용한 일반허가 17호(General License No. 17)를 공표하여 미국정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기업들이 다음의 제약조건 범위 안에서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게 함.

- i)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 금지
- ii)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담당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나 개인과 관련된 투자 금지(부록표 1 및 부록표 2 참고)
- iii) 50만 달러 이상인 모든 신규투자는 매년 국무부에 지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이 중 일부는 공개
- iv)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에 대한 모든 투자를 60일 내에 국무부에 보고

- (금융 분야) 또한 미국정부는 2012년 5월 17일 미얀마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어 7월 11일 재무부가 일반허가 16호(General License No. 16)를 통해 다음의 제약조건 범위 안에서 미얀마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출이나 재수출을 허용함.
  - i)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 금지
  - ii)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나 개인과 관련된 투자 금지
  
- (원조 분야) 미국은 2012년 10월 법률 112-192호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기구의 지원을 미국이 반대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유예(waiver)하였고, 이로써 국제기구의 미얀마 원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완화됨.
  
- (무역 분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직전인 2012년 11월 16일에 수입금지 완화를 발표함.
  - 미얀마산 물품 수입금지는 미얀마 기업과 미얀마에 수출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분야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봉제와 섬유제품, 수산물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아웅산수치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정부는 수입금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2012년 11월 16일 미 재무부는 미얀마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일반허가 18호(General License No. 18)를 발표하였는데, 일반허가 18호는 다음 두 가지 제한조건을 포함함.
    - i) 미얀마산 경옥(jadeite)과 루비, 이를 가공한 보석류는 여전히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됨.
    - ii) SDN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과 개인,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됨.
  
- 지속적인 제재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2012년 10월 제재 관련 신규 대통령령(E.O. 13619)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얀마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인권 침해, 북한산 무기수입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함.
  - 이는 SDN 리스트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제재완화를 보강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해석됨.
  
- 현재 미국의 미얀마 제재완화는 전적으로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완화 관련 조치들은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적용유예(waiver)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의회는 대(對)미얀마 수입금지에 관한 핵심 법인 버마자유민주주의법을 2012년 8월 연장하였는데, 비록 적용유예로 수입금지가 완화되었으나 의회는 기본적으로 미얀마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분야별 제재완화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적용유예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조금지 완화의 경우와 같이 이를 위한 특별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PL. 112-92).

- 개별 법령의 제재조치에 대해 적용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유사한 제재내용이 포함된 다른 법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조 관련 제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무부 등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가. 제재 해제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1월 19일 전격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안보적 요인을 미얀마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유사한 사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초기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조치가 시작된 지 불과 20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가 미국의 미얀마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2)</sup>
- 현재 미국이 제재 해제가 아닌 완화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미얀마 정책이 상반된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데 따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와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개발과 내수시장 등 미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국내외적 이미지를 지키고, 특히 여전히 강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반대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제재는 유지해야 하는 입장임.
    - 미국의 입장에서 제재완화는 경제적 실효와 관계없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유용한 정책임.
- 장기적으로 보면, 2015년 미얀마의 총선거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특히 아웅산수치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미얀마 제재는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음.
  - 아웅산수치가 현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2015년 선거 이전이라도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실시된다면 완전 해제 역시 예상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
  - 남아공의 경우 1994년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일 년 전인 1993년 미국의 제재 해제가 마무리되었음.

2) Washington Post(2012), "Why Obama's Trip to Burma is Such a Big Deal"(November 10, 2012).

- 따라서 한국은 미얀마 제재가 잔존하는 향후 1~2년 동안 제재 국면에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나. 기업부문 고려사항: 리스크 관리

-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제재완화가 법 개정이 아닌 적용유예를 통한 행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과 경제협력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음.
  - 미국정부는 2012년 11월 수입금지를 완화하면서 미얀마 경제제재에 대한 핵심권한(core authority)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얀마 제재에 관한 법령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제재완화가 적용유예를 통해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임,
- SDN 리스트 중심의 선별적 제재하에서 미얀마와 관련된 금융거래와 투자, 교역은 허용되나 미국기업들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며, 제3국 기업의 경우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음.
  -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기존의 포괄적 제재에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운영하는 SDN 리스트 중심의 선별적 제재로 전환하고 있음.
    - 제3국 기업이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평판 실추나 애국법 311조 등에 의거한 신용리스크가 기업에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현재 미국 제재 국면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협력 파트너 선정에 주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SDN 리스트는 미얀마의 주요 기업과 주요 기업가들을 포함하고 있음(부록표 1 및 부록표 2 참고).
  - 1) 현재의 미국 제재 국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2) 잔존하는 제재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적지 않은 거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단기적으로 미얀마 경제 전체에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완화나 유예보다는 해제 같은 전면적인 조치가 있어야 대외 환경 정상화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정부 부문 고려사항: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현재 미얀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은 선점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경제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나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미온적인 입장임.

- 일본기업들은 양곤(Yangon) 근교 필라와(Thilawa) 항만개발을 추진하면서 SDN 리스트에 등재된 재벌 윈 아웅(Win Aung)과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일본은 이로 인한 평판 실추나 금융거래상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일본은 16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달러 송금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유로 결제로 인한 이중환전이나 추가 수수료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일본은 1996년 미국의 금융제재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달러 송금을 중단했으나 최근 미츠이스미토모 은행에 이어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미얀마 현지의 민간은행과 계약을 맺어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소개하는 일본 기업이 현지 구좌로 달러를 송금하거나 역으로 현지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됨.
  - 2012년 8월 역시 SDN 리스트에 포함된 미얀마 기업가 Zaw Zaw(Max Myanmar 그룹)가 싱가포르 Aussino 기업과 역합병(reverse takeover) 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시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음.
    - 싱가포르 규제당국이 이 역합병을 허용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국면에서 주요국이 미국의 제재 국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임.
- 한국정부는 미국의 제재완화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지원전략을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달러 송금 재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
- 2010년 한국에서 미얀마에 대한 달러 송금이 중단된 배경에는 애국법 311조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있었고, 현재에도 앞에서 기술했듯이 미국 제재완화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존재하여 금융권에서는 달러 송금 재개로 인한 신용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음.
  - 한국 시중은행들이 최근 미얀마 은행들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있으나 아직 달러 송금은 재개되지 않았음.
  - 은행들이 신용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얀마 달러 송금 재개에 대해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판단과 지원이 필요함.

## 부록

부록표 1. 미국 재무부 SDN 리스트, 기업 부문(2012년 11월 19일 기준)

기업명	SDN 분류
AIR BAGAN HOLDINGS PTE. LTD.	BURMA
AIR BAGAN LIMITED	BURMA
ASIA GREEN DEVELOPMENT BANK	BURMA
ASIA LIGHT CO. LTD.	BURMA
ASIA PIONEER IMPEX PTE. LTD.	BURMA
ASIA WORLD CO. LTD.	BURMA
ASIA WORLD INDUSTRIES LTD.	BURMA
ASIA WORLD PORT MANAGEMENT CO. LTD	BURMA
AUREUM PALACE HOTELS AND RESORTS	BURMA
AYER SHWE WAH COMPANY LIMITED	BURMA
CO-OPERATIVE EXPORT-IMPORT ENTERPRISE	BURMA
DAGON INTERNATIONAL LIMITED	BURMA JADE
DAGON TIMBER LIMITED	BURMA
DIRECTORATE OF DEFENCE INDUSTRIES	BURMA
ESPACE AVENIR EXECUTIVE SERVICED APARTMENT	BURMA JADE
G A ARDMORE PTE. LTD.	BURMA
G A ARDMORE PTE. LTD.	BURMA JADE
G A CAPITAL PTE. LTD.	BURMA
G A CAPITAL PTE. LTD.	BURMA JADE
G A FOODSTUFFS PTE. LTD.	BURMA
G A FOODSTUFFS PTE. LTD.	BURMA JADE
G A LAND PTE. LTD.	BURMA
G A LAND PTE. LTD.	BURMA JADE
G A RESORT PTE. LTD.	BURMA
G A RESORT PTE. LTD.	BURMA JADE
G A SENTOSA PTE. LTD.	BURMA
G A SENTOSA PTE. LTD.	BURMA JADE
G A TREASURE PTE. LTD.	BURMA
G A TREASURE PTE. LTD.	BURMA JADE
G A WHITEHOUSE PTE. LTD.	BURMA
G A WHITEHOUSE PTE. LTD.	BURMA JADE
GOLD ENERGY CO. LTD.	BURMA
GOLD OCEAN PTE LTD	BURMA
GOLDEN AARON PTE. LTD.	BURMA JADE
GREAT SUCCESS PTE. LTD.	BURMA
GREEN LUCK TRADING COMPANY	BURMA
HOTEL MAX	BURMA
HTOO GROUP OF COMPANIES	BURMA
HTOO TRADING COMPANY LIMITED	BURMA

부록표 1. 계속

기업명	SDN 분류
HOOO WOOD PRODUCTS PTE. LIMITED	BURMA
INNWA BANK LTD	BURMA
MAX (MYANMAR) CONSTRUCTION CO., LTD	BURMA JADE
MAX MYANMAR GEMS AND JEWELLERY CO., LTD.	BURMA JADE
MAX MYANMAR GROUP OF COMPANIES	BURMA JADE
MAX MYANMAR MANUFACTURING CO., LTD.	BURMA JADE
MAX MYANMAR SERVICES CO., LTD.	BURMA JADE
MAX MYANMAR TRADING CO., LTD.	BURMA JADE
MAX SINGAPORE INTERNATIONAL PTE. LTD.	BURMA JADE
MYANMA ECONOMIC BANK	BURMA
MYANMA FOREIGN TRADE BANK	BURMA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BURMA
MYANMAR AVIA EXPORT COMPANY LIMITED	BURMA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BURMA
MYANMAR GEM ENTERPRISE	BURMA
MYANMAR IMPERIAL JADE CO., LTD	BURMA
MYANMAR IVANHOE COPPER COMPANY LIMITED	BURMA
MYANMAR PEARL ENTERPRISE	BURMA
MYANMAR RUBY ENTERPRISE CO. LTD.	BURMA
MYANMAR TIMBER ENTERPRISE	BURMA
MYANMAR TREASURE RESORTS	BURMA
MYAWADDY BANK LTD.	BURMA
MYAWADDY TRADING LTD.	BURMA
NO. 1 MINING ENTERPRISE	BURMA
NO. 2 MINING ENTERPRISE	BURMA
NO. 3 MINING ENTERPRISE	BURMA
PAVO AIRCRAFT LEASING PTE. LTD.	BURMA
PAVO TRADING PTE. LTD.	BURMA
ROYAL KUMUDRA HOTEL	BURMA JADE
S H NG TRADING	BURMA
SENTOSA TREASURE PTE. LTD.	BURMA JAD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OF BURMA	BURMA
TERRESTRIAL PTE. LTD.	BURMA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BURMA
YUZANA COMPANY LIMITED	BURMA
ZAY GABAR COMPANY	BURMA

주: 음영 처리한 기업은 미얀마 10대 민간기업임.

자료: 장준영(2010),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름.

부록표 2. 미국 재무부 SDN 리스트, 개인(2012년 11월 19일 기준)

	이름	생년월일	신상정보
1	Aung HTWE	1943년 2월 1일	Lieutenant-General; Chief of Armed Forces Training;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2	Aung Thein LIN	1952년	Brigadier General, Mayor and Chairman of Yangon City (Rango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a.k.a. 'LYNN, Aung Thein'
3	Aung Thet MANN	1997년 6월 19일	
4	Chan NYEIN	1944년	Minister of Education
5	Hla TUN	1951년 7월 11일	Major General, Minister of Finance and Revenue
6	Hsing Han LO	1938년 또는 1953년	
7	Htay MYINT	1955년 2월 6일	Chairman, Yuzana Company Limited
8	Khin Lay THET	1947년 6월 19일	wife of Thura Shwe Mann
9	Khin SHWE	1952년 1월 21일	President, Zay Gabar Company
10	Kyaw MYINT	1940년	Minister of Health
11	Kyaw WIN	1944년 1월 3일	Lieutenant-General; Chief of Bureau of Special Operation 2;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12	Lun THI	1940년 7월 18일	Brigadier-General; Minister of Energy
13	Maung AYE	1937년 12월 25일	Vice Senior General; Vice-Chairman of 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Deputy Commander-in-Chief, Myanmar Defense Services (Tatmadaw); Commander-in-Chief, Myanmar Army
14	Maung BO	1945년 2월 16일	Lieutenant-General; Chief of Bureau of Special Operation 4;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15	Maung OO	1952년	Major General; Minister of Home Affairs
16	Myint Myint KO	1946년 1월 11일	wife of Saw Tun
17	Myint Myint SOE	1953년 1월 15일	
18	Myint SWE	1951년 6월 24일	Lieutenant-General; Chief of Military Affairs Security
19	Nyan WIN	1953년 1월 22일	Major General;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	Pye Phyo Tay ZA	1987년 1월 29일	Son of Tay Za
21	Saw LWIN	1989년	Major General, Minister of Industry 2
22	Saw TUN	1935년 5월 8일	Major General, Minister of Construction
23	Soe THA	1945년	Minister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부록표 2. 계속

	이름	생년월일	신상정보
24	Soe WIN	1947년 5월 10일	Lieutenant-General; Prime Minister;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25	Sor Hong NG	1958년	싱가포르 국민; Identification Number S1481823E (Singapore); Chief Executive, Managing Director, and Owner, Golden Aaron Pte. Ltd., Singapore; Director and Owner, G A Ardmore Pte. Ltd., Singapore; Chief Executive, Director and Owner, G A Capital Pte. Ltd., Singapore; Director and Owner, G A Foodstuffs Pte. Ltd., Singapore; Chief Executive, Director and Owner, G A Land Pte. Ltd., Singapore; Director and Owner, G A Resort Pte. Ltd., Singapore; Chief Executive, Director and Owner, G A Sentosa Pte. Ltd., Singapore; Chief Executive, Director and Owner, G A Treasure Pte. Ltd., Singapore; Director and Owner, G A Whitehouse Pte. Ltd., Singapore; Chief Executive, Manager, and Owner, S H Ng Trading Pte. Ltd., Singapore
26	Steven LAW	1958년 5월 16일 또는 1960년 8월 27일	Passport 937174(미얀마 여권)
27	Tay ZA	1964년 7월 18일 또는 1967년 6월 18일	Managing Director, Htoo Trading Company Limited; Chairman, Air Bagan Holdings Pte. Ltd. (d.b.a. Air Bagan)
28	Than SHWE	1935년 2월 2일	citizen Burma; Senior General, Minister of Defense and Commander-in-Chief of Defense Services; Chairman,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29	THAUNG	1937년 7월 6일	Minister of Labor; Minister of Science & Technology
30	Thein ZAW	1951년 10월 20일	Brigadier General, Minister of Telecommunications, Post, & Telegraph.
31	Thidar ZAW	1964년 2월 2일	Wife of Tay ZA
32	THIHA	1960년 6월 24일	
33	Tin Aung Myint OO	1950년 5월 27일	Lieutenant-General; Quartermaster General; Minister of Military Affairs;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34	Tin Lin MYINT	1947년 1월 25일	
35	Tin Naing THEIN	1955년	Brigadier General, Minister of Commerce.
36	U Kyaw THEIN	1947년 10월 25일	National ID No. S2733659J(싱가포르 영주권) issued 07 Jul 2005; permanent resident Singapore
37	Win AUNG	1953년	
38	Ye MYINT	1943년 10월 21일	Lieutenant-General; Chief, Military Affairs; Chief, Bureau of Special Operation 1; Member,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39	Zaw MIN	1949년 1월 10일	Colonel, Minister of Electric Power 1
40	Zaw ZAW	1966년 10월 22일	Passport 828461(미얀마 여권) issued 18 May 2006 expires 17 May 2009